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청원번호 : 제15호

나. 청 원 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김태형 외 1,684명

다. 소개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라. 접수일자 : 2023년 8월 29일

마. 회부일자 : 2023년 9월 4일

2. 청원요지

-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 교통사고가 발생한 한가람로는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수송 대형트럭 통행이 빈번하며,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서, 풍납동 주민인 아산병원 교수의 사망사고가 난 곳이기도 함.
 -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 보행육교 설치를 계속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미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거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삼표레미콘의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요청하며,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청원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한가람로부터 이어지는 강동대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자 삼표레미콘의 대형트럭이 과속하는 곳으로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단 점유 중인 (주)삼표산업의 퇴거, ▶문화재청의 규제 완화를 통한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를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서울아산병원, 풍성초·중학교, 풍납중학교, 송파세무서를 이용하는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단 점유 중인 (주)삼표산업을 조속히 퇴거시키고, 올림픽대로 남단에 보행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임.

나. 삼표레미콘 퇴거 관련

- (주)삼표산업은 1978년경부터 현 풍납토성 내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이후 문화재청은 2003년 7월부터 해당 부지를 포함한 풍납토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음.

- 이에 서울시와 송파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2003년)’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장부지의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한바, 2020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주)삼표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손해배상,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공장 부지수용 사업인정고시 취소 청구 등 6건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일부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총 21,107㎡ 중 71.2%인 15,031㎡)하고 있음.

< 서울시 및 송파구와 (주)삼표산업 종결한 소송현황 >

연번	구분	사건명/당사자	사건 내용	진행상황
1	민사 - 공장부지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서울고법2018나2017714)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서울시	<협의취득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제소일 : '15.10.22.	- 1심 피고 승소 - 2심 피고 승소 종결 (20. 1.17.)
2	민사 - 사옥부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2017나2058602)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서울시, 송파구	<협의취득 부지 소유권 말소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 - 제소일 : '16.3.10.	- 1심 피고 승소 - 2심 피고 승소 종결 ('20. 1. 8)
3	행정 - 공장부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법2017누90157)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서울시, 송파구	<토지 무상사용권 확인·기납부 사용료 반환 청구> - 제소일 : '16.2.19.	- 1심 피고 승소 - 2심 피고 승소 종결 ('19. 2.1.)
4	행정 - 공장부지	사업인정고시 취소 (대법원2017두71031)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보조참가 : 문화재청장, 서울시, 송파구청장)	<공장부지 수용 사업인정고시 취소 청구> - 제소일 : '16.3.4.	- 1심 원고 패소 - 2심 피고 승소 - 상고심 피고 승소 종결 ('19.2.28.)
5	행정 - 공장부지	사용 불허처분 취소심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 (주)삼표산업 ▶피청구인 : 송파구	<공유재산 사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 - 제소일 : '20.10.13.	- 취소심판 기각재결 ('20.12.21)
6	행정 - 공장부지	수용재결취소 (대법원2023두31867)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서울시지도위, 송파구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 - 제소일 : '20.8.21.	- 1심 일부 원고 승소 - 2심 피고 승소 - 상고심 피고 승소 종결 ('23.4.27.)

- 또한, 서울시 및 송파구와 (주)삼표산업은 무단점유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 인도, 공유재산 불허 처분 취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들 역시 서울시와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주)삼표산업이 항소하면서 각각 2심과 3심이 진행 중임.

< 서울시 및 송파구와 (주)삼표산업 진행중인 쟁송현황 >

연번	구분	사건명/당사자	사건 내용	진행상황
1	민사 - 공장부지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2022나2032833) ▶원고 : 서울시, 송파구 ▶피고 : (주)삼표산업	<무단점유 공장부지 인도 청구> - 제소일 : '20.8.31. - 사용불허한 공장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인도 청구	- 1심 원고 승소('22.7.21.) - 2심 진행 중
2	행정 - 공장부지	사용 불허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2022누54391)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송파구	<공유재산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 청구> - 제소일 : '21.3.16. - 피청구인의 공장부지 사용 불허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	- 1심 피고 승소('22.6.24.) - 2심 피고 승소('23.6.1.) - 3심 진행 중
3	행정 - 공장부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2022누63265) ▶원고 : (주)삼표산업 ▶피고 : 송파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청구> - 제소일 : '21.5.20. - 삼표공장 부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	- 1심 피고 승소('22.9.15.) - 2심 진행 중

다.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 관련

- 동 청원을 통해 주민들이 보행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곳은 올림픽대교 남단의 풍납토성과 송파세무서를 횡단할 수 있는 강동대로임.
- 강동대로는 왕복 10차선의 간선도로로서 풍납동에서 서울아산병원 및 그 인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풍성초·중학교, 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함.



- 해당 지역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제303회 정례회, 2021.12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청원 운영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청원은 기존 청원과 달리 삼포레미콘 즉각 퇴거 요청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타당하다 하겠음.
- 이에 송파구에서는 ‘강동대로(풍납동~아산병원) 육교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2022.3월~12월)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2022.11.10.)받았음.
- 심의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면 풍납토성 경관이 훼손되므로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송파구 및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 송파구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행육교를 북측으로 이격 설치하면,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운전자의 시거 확보에 불편함이 따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등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지난 6월 서울시·송파구·송파경찰서는 우리 위원회 김규남 의원의 요청으로 ‘강동대로 송파세무서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였는데, 해당 위치는 올림픽대교 진·출입 연결구간과 인접하여 교통정체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

라. 청원에 대한 의견

- 동 청원은 지난 6월 한가람로에서 풍납동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제출하게 된 것으로, 공장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삼표산업의 레미콘 트럭이 협소한 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풍납동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 (주)삼표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레미콘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2020년 서울시와 송파구로 이전되었고, 지속적인 소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와 송파구는 조속한 토지 인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지점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 기제안된 청원에 따라 송파구청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문화재청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그러나 문화재청은 풍납토성의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보행육교를 50m 이격설치하라는 조건부 수용 결과를 내었고,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 및 사업의 경제성을 사유로 이를 철회하였음.
- 문화재청은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청원번호
11-00015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포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발 의	소개 의원	접수일자	소관 상임위
	김규남 의원	2023.8.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형(송파구 토성로 37 현대리버빌 1차아파트 302동 1302호) 외 1,684명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발생 한가람로는 삼포레미콘 트럭 통행이 빈번하고,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높으며 아산병원 교수(풍납주민) 사망사고 난 곳이기도 함 - 보행육교 설치를 계속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미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 - (주) 삼포레미콘의 즉각적인 퇴거와 보행육교의 설치를 요구함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포산업부지 수용('19.11.22), 토지 인도 소송('20.8.31. 1심승소 '22.7.21) ○ 육교관련 문화재현상변경 신청('22.10.26.), 50m 이격안 채택('22.11.23.)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규남 의원 청원 소개 ○ 집행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수용재결', '사용허가 불허 처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공장 일부 구역 철거' 등 송파구의 삼포레미콘 이전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잔여토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소송과 자진 인도에 대한 협의도 적극 병행하여 추진 중임 - 보행육교 관련하여 세무서앞 구간을 기본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50m 이격안으로 허가한 사항으로 송파구에서 주민 이동동선 불편 등으로 설치 어렵다고 판단함, 기본안 통과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재신청하여 문화재청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문화재관리과	팀장	오정숙(☎2133-2622)
		담당	김상철(☎2133-2627)